

[사 건 명] 행심 2018 - 74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학급교체 등』 처분 취소 청구

□ 청구인 : ◇◇◇

□ 피청구인 : ○○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11.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학급교체 등』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I. 사건개요

가. 청구인 ◇◇◇은 ○○학교 학생으로, 2018. 10. 30. 발생한 피해학생 □□□에 관한 학교폭력에 대해 2018. 11. 1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라 함)가 개최되었고, 그 결과 피청구인은 2018. 11. 15. 청구인에게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급교체, 학생 및 학부모 부가적 특별교육 6시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함) 조치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통보받고, 2018. 11. 23.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 가. 2018. 11. 12. 자치위원회 개최 시, 청구인의 아버지, 피해학생의 어머니만 참석하였고, 청구인의 아버지는 담임교사로부터 절차에 관한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으며 자치위원회 소집통지도 수령하지 못하였다. 청구인 역시 담임교사로부터 자치위원회에 참석하여 사건의 경위와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으며 자치위원회에서 청구인 아버지는 전후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적극적인 항변할 기회도 갖지 못하였고, 분명 쌍방 폭행임에도 피해학생 측의 피해가 크다는 이유로 가해자 취급을 받고 학급교체라는 가혹한 처분을 받게 되었다.
- 나. 자치위원회의 판단과 그에 근거한 처분은 피해학생의 입은 피해 정도에 치중하여 쌍방폭행이라는 이 사안의 본질은 도외시한 점, 대부분 확인되지 않은 피해학생 어머니의 일방적 진술에 의존하여 판단한 점, 피해학생이 아직 미성숙한 초등학생인 점 등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과중한 처분으로 위법 부당하다.
- 다. 청구인이 맞은 횡수는 더 많은데 결과가 피해학생이 1대 맞고 코뼈가 부러졌다는 이유로 청구인만 다른 학급으로 하는 것은 전체 상황을 볼 때 형평에도 맞지 않고, 청구인이 다른 반으로 보내져 낯선 환경에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으며, 문제 학생이라는 학생들의 시선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등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청구인과 피해학생이 서로를 이해하

고 갈등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배우고 익혀나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이를 도와주는 것이 학교와 교사의 역할이며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입을 불이익은 너무나 크다.

라. 종전 청구인이 피해학생에게 헤드록을 건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확인 결과, 청구인은 왼팔로 피해학생의 팔짱을 끼고 오른팔로 피해학생의 어깨 쪽에 손을 올리고 교실 옆쪽으로 가려고 한 상황에서 피해학생이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차기를 하며 청구인의 배를 가격하기에 청구인도 주먹으로 한 차례 피해학생을 때렸는데 잘못하여 피해학생의 얼굴을 치는 바람에 코뼈가 골절되게 되었다.

마. 피해학생으로부터 배와 머리를 수회 맞고 있는 상황에서 주먹으로 1대 가격한 것인데 잘못하여 코를 맞아 골절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피해학생이 다친 결과만을 가지고 폭력의 심각성 정도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바. 청구인과 피해학생의 성향의 차이, 평소 청구인의 교우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피해학생의 청구인에 대한 일방적인 생각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는 파악하지 않은 채 1회적인 싸움을 마치 심각하고 지속적인 피해인 마냥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사. 자치위원회는 청구인이 보낸 ‘내일 보자’ 라는 문자를 마치 피해학생을 폭행할 것을 예정하고 한 말이라고 판단하나 이는 전혀 근거가 없고, 피해학생의 일방적인 추측에 불과한 것을 피해학생의 말과 다친 결과만을 놓고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여 폭력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았다.

아.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가 사건 당일 병원으로 가서 피해학생 측에 정중하게 사과하였지만 피해학생의 어머니가 청구인의 어머니에 대해 폭언을 하고 청구인에게도 위협적으로 다가오며 비난하자 청구인이 속상한 마음에 울면서 표현한 것을 청구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해학생의 어머니는 사건 당일 청구인이 피해학생의 병문안을 다녀온 뒤 반 친구들과의 단체대화방의 이야기를 보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고 자치위원회도 이를 근거로 반성의 정도가 낮다고 판단하였으나, 전체 대화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친구들이 있는 단체대화방으로 들어왔고, 친구들이 묻자 자세한 언급은 회피하자 친구들도 청구인의 기분을 알았는지 더 이상 그 부분에 관해서는 대화를 하지 않았으며, 이후 30분 정도 뒤에 한 친구가 분위기를 바꿔 볼 생각이었는지 화제를 전환하였고 청구인이 소극적으로 대답한 것에 불과하였다.

자. 청구인 측에서는 처음부터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 피해 변제를 할 생각이었으나 피해학생 측의 지나친 행동과 폭언들로 청구인측은 다가갈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며, 청구인 역시 피해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는데도 이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와 같이 단순히 청구인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화해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고 피해학생 측의 지나친 태도로 인해 화해하지 못하는 형편이므로 처분함에 있어 이 같은 사정도 모두 감안하여 판단하였어야 한다. 청구인의 모친과 피해학생의 어머니가 주고받은 대화를 보면, 청구인 측에서 사건 당일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고, 병원에서 폭언을 당했음에도 재차 사과하고 피해학생의 건강을 염려하고 쾌유를 기원하였다. 또한 일체의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하였고, 실제로 2018. 11. 23. 피해학생 측에서 치료비 영수증을 보내오자 곧바로 전액 입금하였다. 자치위원회 소집 이후 주고받은 대화를 보더라도, 피해학생의 어머니가

합의서 서명을 요구하였으나 맞벌이를 하는 청구인의 부모가 시간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라 가능한 시간을 말하였는데, 피해학생의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이해하려 들지 않고 일방적으로 최후통첩이라며 문자를 보내 왔다. 이러한 피해학생 측의 감정적이고 지나친 태도로 인해 화해에 이르지 못한 것이지 청구인 측에서는 청구인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 진지하게 사과하고 화해를 청하였고, 청구인은 피해학생과 화해하고 다시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데 피해학생의 어머니가 두려워 그렇게 할 수 없을 거 같다고 상심해 하고 있기에 화해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 이러한 사정도 충분히 고려되었어야 한다.

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학급교체 등 처분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피해학생 측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근거한 것으로 부당하고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불이익을 주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관련 법률에 따라 청구인과 청구인의 보호자에게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자치위원회가 개최됨을 알림과 동시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것을 공문과 함께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의 보호자들에게 자치위원회가 개최됨을 통지서로 보내기 전에 전화로 안내하였고, 청구인의 보호자 역시 전화, 문자로 확인하였다.

나. 2018. 11. 12. 청구인의 아버지가 자치위원회에 참석하였을 때, 당시 위원장은 청구인의 아버지에게 사안에 대해 설명한 내용이 맞는지 또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그에 대한 의견 진술을,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으며, 쌍방폭행이므로 피해관련, 가해관련 입장에서 모두 고려하여 진술을 하도록 알려주었으며, 청구인의 아버지는 질의에 응답하였으며 그 사건에 대해서 의견 역시 진술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이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이 사건은 쌍방폭행으로 처리되어 관련 학생들이 각각 보호조치와 선도조치가 동시에 나온 사안이며, 즉 청구인만이 아니라 피해학생 역시 청구인에게 행사한 학교폭력으로 가해학생으로서 선도조치가 이루어졌다.

라. 자치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전담기구에서 확인된 피해, 가해 사실을 토대로 청구인을 포함한 관련 보호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심의하고 의결하여 이 사건 처분을 결정하였다. 전담기구에서 가해학생, 피해학생 및 당시 학교폭력 현장에 있던 목격자 학생들의 진술을 통하여 사실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피해학생의 목을 감싼 상황에서 (헤드록) 피해학생을 청소도구 있는 곳으로 끌고 가려 하였고 피해 학생이 이에 저항하면서 그 과정에서 청구인이 피해학생에게 맞아 재차 피해학생을 끌고 가려고 하였으며, 피해학생은 청구인에게 ‘하지 말라’ 며 울면서 청구인을 주먹과 발길질로 때리자 이에 청구인이 피해학생의 얼굴을 때려 비강 내 뼈가 골절된 것이다. 따라서 자치위원회는 가해, 피해학생의 진술만이 아니라 목격학생들의 진술로서 확인된 사실을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을 결정하

였고 그에 따른 사실오인으로 인한 부당한 결정을 하지 않았다.

마. 피해학생은 청구인의 신체적인 폭력으로 인하여 비강 내 뼈가 골절되어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가 심한 점 등을 고려하여 폭력의 심각성 정도를 매우 높음(4점)으로 판단하였다.

바. 청구인은 피해학생만이 아니라 다른 학생들에게도 일명 헤드록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단순히 장난 혹은 친구들과의 친교 행위 정도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이나, 헤드록이라는 행위 자체가 단순히 장난 정도, 혹은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며, 자치위원회 위원들도 위와 같은 행위의 위험성을 지적하였다. 청구인과 피해학생 사이에는 이미 지난 3월에도 팔을 비튼 행위로 문제가 되어 서로 화해가 이루어졌던 점, 이에 대해 피해학생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피해를 보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학교폭력의 지속성을 높음(3점)으로 판단하였다.

사. 청구인이 피해학생에게 이 사건 전날 메신저로 ‘내일 학교에서 보자’ 라는 문자를 보낸 점, 사건 당일 이야기를 하자며 팔짱을 끼고 팔로 머리를 감싸며 교실 뒤쪽으로 데려간 점, 피해학생이 하지 말라고 하며 한 번 뺏으나 다시 동일한 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하여 학교폭력의 고의성을 높음(3점)으로 판단하였다.

아. 청구인은 피해학생에게 사과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학생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방문하였던 당시에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이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대화한 청구

인의 태도를 보면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학교폭력의 반성정도를 낮음(3점)으로 판단하였다.

자. 청구인은 피해학생 보호자의 일방적인 태도에 의해 화해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과 피해학생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학생이 학교를 나오지 못하고 있으며 보호자 사이에도 역시 화해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학교폭력의 화해정도를 낮음(3점)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는 피해학생 역시 청구인과 동일한 점수를 받았다.

차. 위 점수를 합하면 ‘8호 전학’ 조치를 결정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피해학생이 오면 사과하고 친하게 지낼 것이라고 주변 친구들에게 말한 점을 고려하여 선도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였고 피해학생 역시 전학보다는 학급교체를 바라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결정하였다.

카.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만이 아니라 피해학생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사안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심의, 결정하였다. 청구인이 당사자 일방만의 의견을 반영한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피해학생이 조치가 결정된 이후에도 가해학생을 두려워하며 출석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청구인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진 후 비로서 학교에 나온 점, 피해학생 역시 쌍방으로 인하여 필요한 선도 조치를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처분근거 법령

-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2. 인정되는 기초 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증거자료,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구술심리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2018. 10. 28. 같은 반 1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피해학생이 ‘용이 듣기 싫어하는 말은?’, ‘용용 죽겠지’ 라는 문자를 보내자, 청구인이 ‘노잼인데 그만하지’ 라고 문자를 보냈고, 피해학생이 ‘반성문을 영어로(해석해봐)’, ‘글로벌’ 이란 문자를 다시 보내자, 청구인은 ‘□□□ 아까 작작하라 했잖아’ 라는 문자를 보냄.
- 나. 다음날인 10. 29. 같은 채팅방에서 피해학생이 ‘김치담그는 법’ 사이트 주소를 연결해 보냈고, 이를 본 청구인이 ‘어제도 말했지 작작하라면 작작해’ 라고 문자를 보냄. 이에 대해 피해학생이 ‘모가?’ 라며 여러 가지 이모티콘을 보내자, 청구인은 ‘내가 우습냐? ㅋㅋ’, ‘넌 학

교에서 보자' 라고 문자를 보냄.

다. 다음날 10. 30. 2교시 쉬는 시간에 청구인이 피해학생에게 이야기 좀 하자며 팔짱을 끼고 팔로 머리를 감싸며(헤드록) 교실 뒤쪽으로 데리고 가자, □□□ 학생이 하지 말라고 하며 한 번 뺏으나 다시 하자 청구인의 머리와 배를 때림. 이에 청구인도 주먹으로 피해학생 얼굴을 한 대 때렸고 피해학생의 비강 내 뼈가 골절됨.

라. 같은 날 피해학생은 길병원에 입원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가 사과하기 위해 병원에 방문하였으나, 청구인 본인의 사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마. 피해학생은 2018. 11. 2. 비관혈적 도수정복술을 시행하고 11. 4. 퇴원하여 이후 통원치료를 받음.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절차적 하자 여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소지로 학폭위 참석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청구인의 부재로 송달은 되지 않았으나, 담임교사가 전화 및 문자로 거듭 학폭위 개최 사실을 알리고 참석하여 의견 진술할 것을 안내하였다. 청구인의 보호자 또한 전화, 문자로 통지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다만 청구인 본인 출석에 대해서는 듣지 못해 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아 충분한 진술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피청구인 측(담임교사)에서는 이 사건 행정심판위원회에 출석하여 전화로 청구인 본인 및 학부모의

출석에 대해 안내하였다고 진술하고, 피해학생의 학부모도 피해학생의 출석에 대해 안내를 받았다고 하는바, 특별히 청구인에 대해서만 청구인 본인 출석에 관하여 안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관련 규정에 따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보호자가 반드시 함께 참석하여 의견 진술할 것을 요하지 않고, 전화 및 문자로 통보받은 청구인의 아버지가 학폭위에 참석하여 의견 진술의 기회를 보장받았으므로, 이 사건 학폭위 개최에 절차적 위법함이 없다.

나. 학교폭력 해당 여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약취,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청구인이 피해학생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학생이 비강 내 골절상을 입고 상세불명의 불안장애를 겪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다.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동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

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가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또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과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폭위에서는 심각성 매우 높음(4점), 지속성 높음(3점), 고의성 높음(3점), 반성정도 낮음(3점), 화해정도 낮음(3점)으로 평가하였고, 이는 총점 16점으로 8호 전학 조치에 해당하나 선도가능성 및 피해학생의 부모가 전학까지는 바라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한 단계 낮은 7호 학급교체로 경감 처분하였다.

피해학생 진술 및 다른 학생들의 진술(학생의견서)을 통해 청구인이 피해학생에게 일명 헤드락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이 먼저 피해학생을 헤드락 하여 끌고 갔고, 피해학생의 안면을 가격하여 피해학생의 코뼈가 골절되었다. 피해학생은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고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피해학생의 나이, 행위 태양, 결과 발생의 정도에 비추어, 학교폭력의 심각성 정도는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담임교사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출석하여 2018. 3.경에도 피해학생이 청구인으로부터 일명 헤드록을 당하였고, 다른 학생들에게도 이를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의 이 같은 행위로 인해 평소 피해학생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지속성의 정도를 높음으로 판단한 학폭위 결정에는 사실 오인이나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함이 없다.

청구인은 이 사건 전날 피해학생에게 ‘어제도 말했지 작작하라면 작작해’, ‘내가 우습냐? ㅋㅋ’, ‘넌 학교에서 보자’ 라고 문자를 보냈고, 이 사건 당일 이야기를 하자며 강제로 피해학생의 팔짱을 끼고 팔로 피해학생의 머리를 감싸 교실 뒤쪽으로 데려갔는바, 단순히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보기는 어렵다.

청구인이 이 사건 이후 직접 피해학생에게 사과를 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사건 직후 보호자와 함께 피해학생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결국에는 사과하지 않았고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학폭위에서는 이러한 사실 및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대화한 청구인의 태도까지 참작하여, 반성정도를 낮음(3점)으로 판단하였는바, 재량권을 일탈, 남용의 위법함이 없다.

청구인은 피해학생 보호자의 일방적인 태도로 인해 화해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다. 회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피해학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판단하였다.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아 양측 모두에 대해 화해 정도를 낮음(3점)으로 판단하였는바,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함이 없다.

피청구인은 쌍방폭행으로 처리하여 피해학생에 대해서도 3호 학교봉사 조치를 하였다. 사건 경위, 결과발생의 정도(피해정도)에 비추어 청구인에 대해 피해학생보다는 더 중한 조치함이 타당하다. 세부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면 8호 전학 조치에 해당하나 선도가능성을 고려하여 7호 학급 교체로 경감 조치하였는바,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비교하여 형평성에

반한다거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고로, 이미 학급교체 되어 현재 방학 중이고 곧 학기가 종료되는데다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에 따라 7호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나, 4, 5, 6호 조치의 경우에는 졸업 후 2년 간 보존하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7호 학급교체 조치가 4호 사회봉사, 6호 출석정지 조치에 비해 반드시 청구인에게 불리한 처분이라고 볼 것만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야 할 만한 재량권을 일탈, 남용의 위법이 없다.

라. 결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적 하자가 없고,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

V. 결 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